

수 신 : 서울특별시 시장
참 조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조성반
제 목 : 제60차 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정관 제29조 제2항

3. 정관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재단 제60차 이사회 소집 승인을 요청합니다.

4. 첨부서류: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 1부

끝.

재단법인 DMC 산학진흥재단 이사장



기 안 사무국장 최영석 이사장 권한대행 최동윤 상임이사

문서 번호 : 사무국 2021-011 (2021.04.09.)

우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9층 905호 (상암동, KGIT센터) / www.dmcnf.org
전화 (02) 6393-5660 전송 (02) 6393-5665 / 전자우편 moon@dmcnf.org

재단법인이사회 소집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 칭	(재)디엠씨산학진흥재단 (전화번호:02-6393-5662)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9층	대표자 김상범(직무대행 최동윤 상임이사)
	설립허가년월일	2008.09.05.	설립허가번호 제2008-24 호
	이사회소집내용	이사장 선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정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차수: 제60차 이사회

일시: 2021년 04월 15일 오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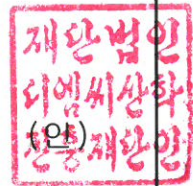
장소: 한식당 달개비(시청옆)

주요안건: 이사장 선임

※ 이사회 회의 안건은 첨부한 이사회 안내문 참조

2022년 04월 09일

신청인 : (재)디엠씨산학진흥재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가.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에 준하는 확인서

1. 사유

1) 김상범 이사장 사임 이후 정관 제22조(이사장 직무 대행)에 따라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사회 소집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2) 이사회회의록 공증 시 공증사무소에서 정관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따른 주무관청 이사회 소집 승인 서류의 부재를 들어 공증을 거부함에 따라 대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권한대행의 이사회 소집권자 여부에 대한 해석

1) 첫째, 권한대행의 포괄적 권한 수임 해석에 따르면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의 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입니다.

2) 둘째,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권 수임 해석에 따르면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회의록 공증사무소의 해석

공증사무소의 해석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권 수임 해석에 따라 주무관청의 이사회 소집 승인 서류를 요구합니다.(정관 제29조를 지적)

4. 안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이사회 소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04.09.

(재)디엠씨산학진흥재단 이사장



첨부. 관련 법률조항 및 규정

(재)디엠씨산학진흥재단 정관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 소집)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이사회 소집 동의 확인서

동의내용

제60차 이사회 소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정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의 제60차 이사회 소집을 동의합니다..

고 흥 석 이사

(서명)

최 동 윤 이사

(서명)

김 용 복 이사

(서명)

서 경 배 이사

(서명)

권 경 현 이사

(서명)

신 경 민 이사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서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이사회 소집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이사회 회의록의 공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의 법인 등기부에 교체되는 이사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선임 이사장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못해 이사장의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2021.04..09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DMC 산학진흥재단

수 신 : 고흥석 이사, 김용복 이사, 신경민 이사, 서경배 이사, 최동윤 이사,
권경현 이사, 박태수 감사, 강현직 감사

제 목 : 제60차 이사회 회의 개최 안내

제60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2021.04.15.(목요일) 오전 7:30

□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제60차 이사회 회의 안건

○ 심의 안건

제1호 이사장 선임의 건

○ 보고안건

제1호 제59차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제2호 재단 사무국 운영체제 개선방안 보고

끝.

(재)DMC 산학진흥재단 이 사 장



기 안 최 영 석

이사장 권한대행

최 동 윤 상임이사

문서 번호 : 경영지원팀-2021-010(2021.04.07.)

우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9층 905호 (상암동, KGIT센터) / www.dmcnf.org

전화 (02) 6393-5660 전송 (02) 6393-5665 / 전자우편 good@dmcnf.org